

2021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용

자격시험의 모든 것, 더존지식서비스센터
<http://license.duzontv.com>

국가기술헌자력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5회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해설서

1. 다음 중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② 기업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이용목적을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③ 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
- ④ 경영자는 재무적 정보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현금 ₩100,000을 납입 받다.

- ① 현금 계정의 차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②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③ 매출계정의 대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④ 장기차입금 계정의 대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3. 다음 중 시산표의 작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은?

- ① 종업원에게 급여 ₩6,000을 지급하면서 분개를 누락하였다.
- ②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의 차변계정에 ₩100,000, 현금의 대변계정에 ₩10,000을 기재하였다.
- ③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0을 차입금계정과 미지급금계정에 각각 기재하였다.
- ④ 제품 ₩40,000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매출액계정에 ₩4,000과 외상매출금계정에 ₩40,000을 기재하였다.

4. 다음 중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
 ③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④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5.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고수단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 ②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 ③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 ④ 주석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②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③ 모든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7. (주)상공상사의 다음 거래들로 인한 2014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 2014년 1월 1일 A법인의 주식 1,000주(액면가 ₩5,000)을 1주당 ₩6,000에 매입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나. 2014년 4월 30일 A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현금배당금 ₩500,000과 주식 20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다. 2014년 12월 1일 A법인의 주식 1/2을 1주당 ₩8,000에 처분하였다.

- ① ₩500,000 ② ₩1,500,000
③ ₩2,000,000 ④ ₩2,300,000

8. (주)상공은 2014년 2월 1일 토지를 ₩100,000에 구매하였다. 2014년 말 (주)상공은 당해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정가치가 ₩12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평가가 당기 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짚지은 것은?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 | | | | |
|--------------|------------|--------------|------------|
| ① ₩20,000 증가 | 변동 없음 | ②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 ③ 변동 없음 | ₩20,000 증가 | ④ ₩20,000 증가 | ₩20,000 증가 |

9. 다음은 (주)안전의 2014년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자료이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인식을 포괄손익계산서 접근법에 의한다고 할 때 적정한 2014년 말 대손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가. 2014년 초 대손충당금 ₩100

나. 2014년 매출액 ₩3,000(현금매출 ₩1,000포함)

다. 2014년 대손발생액 ₩10

라. 2014년 말 매출채권 잔액 ₩900

〈추가자료〉

과거 (주)안전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상매출액을 기준으로 2%, 매출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10% 정도가 매기 평균적으로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상각비의 인식과 충당금 설정은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① (차) 보 험 료 600,000	(대) 선급보험료 600,000
② (차) 선급보험료 600,000	(대) 보 험 료 600,000
③ (차) 가지급보험료 600,000	(대) 보 험 료 600,000
④ (차) 보 험 료 600,000	(대) 가지급보험료 600,000

① ₩230,000 ② ₩300,000
③ ₩420,000 ④ ₩490,000

-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③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로 추정되는 원가
- ④ 관리 및 광고, 판촉활동과 관련한 원가

- ①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후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급여관리프로그램처럼 자사만이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추정가능성 및 통제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① 사채상환손실 ₩448,780 ② 사채상환이익 ₩56,250
③ 사채상환손실 ₩758,533 ④ 사채상환이익 ₩787,271

15. 다음은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 ② 감자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에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된다.
- ④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주식 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16. 대한상공(주)는 2014년 12월까지 개성공단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폐쇄시점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2014년 1월초에 발표하였다. 회사는 진행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폐쇄시점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해고일에 해고의 대가를 포함하여 ₩1,500,000을 지급할 것이며, 폐쇄일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들은 해고의 대가로 ₩500,000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장 종업원은 100명이며, 해고계획의 발표시점에 30명이 공장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공장폐쇄와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시점이 동일할 경우 해고계획 발표시점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 | | | |
|------------|-------------|---------------|-------------|
| ① (차) 해고급여 | 150,000,000 | (대) 미 지 급 비 용 | 150,000,000 |
| ② (차) 해고급여 | 120,000,000 | (대) 미 지 급 비 용 | 120,000,000 |
| ③ (차) 해고급여 | 105,000,000 | (대) 미 지 급 비 용 | 105,000,000 |
| ④ (차) 해고급여 | 50,000,000 | (대) 미 지 급 비 용 | 50,000,000 |

17.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설비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제품보증비용에 대한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18. 다음 중 회계정보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흐름의 종류를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 ②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기업의 발생주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 ④ 직접법에 의한 작성과 간접법에 의한 작성에 있어서 영업현금흐름의 크기는 다르다.

19. 당기 중에 ₩192,000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매출원가는 ₩180,000이고 기말재고자산은 ₩36,000이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몇 회인가?

- ① 8회 ② 7회
③ 6회 ④ 5회

20.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손상차손 ②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변동
③ 소송사건 ④ 이익분배 및 상여금

〈제2과목〉 원가회계

21. 다음 중 기초원가(prime cos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② 직접재료비 + 제조간접비
- ③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④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22. 다음 중 계정분류법에 의한 원가추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료 사용량이 생산중량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중량이 감소한 경우 부재료 사용량도 감소했을 것이다.
- ②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는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복리후생비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지난달에 비해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 ④ 전력비가 생산량에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 전력비가 비례해서 증가했을 것이다.

23.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① 선입선출법 ② 이동평균법
- ③ 총평균법 ④ 후입선출법

24. 직접재료원가(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원가(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제조간접원가(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음 중 당기의 제조활동에 사용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계산을 위해서 재공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차)제품 xxx (대)재공품 xxx ② (차)제품 xxx (대)제조간접원가 xxx
- ③ (차)재공품 xxx (대)제조간접원가 xxx ④ (차)재공품 xxx (대)제품 xxx

25. (주)대한은 전기 미지급경비 ₩200,000이 존재하고, 당기 미지급경비 ₩300,000이 발생하였다. 당기 지급경비가 ₩400,000일 때 당기에 소비한 제조경비 금액은 얼마인가?

- ① ₩400,000 ② ₩500,000
- ③ ₩600,000 ④ ₩700,000

26. 다음 중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차이에 대한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실제발생액 산출 → 예정배부액 배부 → 배부차액 회계처리 → 배부차이계산
- ② 예정배부액 배부 → 실제발생액 산출 → 배부차이계산 → 배부차액 회계처리
- ③ 배부차이계산 → 배부차액 회계처리 → 예정배부액 배부 → 실제발생액계산
- ④ 배부차액 회계처리 → 배부차이계산 → 실제발생액 산출 → 예정배부액 배부

27. D사는 두 개의 제조부문 A, B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문에서 생산한 보조용역의 사용원가율은 다음과 같았다.

S1부문과 S2부문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원가는 각각 ₩200,000과 ₩380,000이었다. D사는 보조 부문원가의 배분에 상호배분법을 사용한다. 제조 부문A에 배분해야 하는 보조부문 총변동원가는 얼마인가?

- ① ₩60,000
- ② ₩140,000
- ③ ₩200,000
- ④ ₩240,000

보조용역 사용부문 보조용역 제공부문	S1	S2	A	B
S1	-	0.4	0.3	0.3
S2	0.2	-	0.3	0.5

28. 다음은 보조부문비의 배부방법인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의 세 가지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 사실을 모두 고려한다.
- ② 단계배부법은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의 절충적 방법이다.
- ③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상호배부법은 자급용역 사실도 고려하고 배부할 수 있다.

29. 한빛공업은 개별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중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무비의 90%로 배부하며, 10월 31일 현재 유일하게 미완성된 작업 #4의 직접 재료비는 ₩16,000, 제조간접비는 ₩18,000인 경우 10월 중 직접재료비는 얼마인가?

- ① ₩60,000 ② ₩64,000
- ③ ₩65,000 ④ ₩68,000

가. 재공품(10월 1일) ₩34,000
 나. 원가요소 소비액
 - 직접재료비 (?)
 - 직접노무비 ₩50,000
 - 제조간접비 ₩45,000
 다. 제품계정 대체액 ₩140,000

30. 10월 중에 두 개의 제조지시서(No.2, No.3)가 착수되었고 제조지시서 No.1은 완성되었다. 각 제조지시서와 관련하여 10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No.1	No.2	No.3	합계
월초재공품	₩60,000	-	-	₩60,000
직접재료비	₩16,000	₩44,800	₩67,200	₩128,000
직접노무비	₩32,000	₩30,400	₩49,600	₩112,000
제조간접비	₩22,400	₩21,280	₩34,720	₩78,400
합 계	₩130,400	₩96,480	₩151,520	₩378,400

- ① 월초재공품재고액 ₩60,000 ② 당기총제조비용 ₩378,400
- ③ 월말재공품재고액 ₩248,000 ④ 당기제품제조원가 ₩130,400

31. (주)대한은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②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 ③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④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32. 다음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산품 종합원가계산은 동일한 투입 원재료로 부터 동시에 생산되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최종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 ② 연산품의 원가계산 방법은 결합원가의 배부기준과 관련이 있다.
- ③ 물량기준법은 중량, 용적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공통된 물량 기준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
- ④ 순실현가치기준법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적인 가공비 또는 판관비를 차감한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33. (주)상공은 X, Y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X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이다. Y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300, 단위당 변동원가는 ₩200이다. 회사 전체의 고정원가는 ₩2,500이다. 두 제품의 매출액기준 구성비가 7:3일 때 ₩2,000의 세전 순이익을 얻기 위한 총매출액은 얼마인가?

- ① ₩10,000 ② ₩15,000
③ ₩20,000 ④ ₩25,000

34. CVP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도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②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 ③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④ 분석기간이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이라고 가정한다.

35. (주)한강은 3분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산차이, 능률차이 및 조업도 차이로 분리하고 있다.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당기제품생산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몇 시간인가? 단, 고정제조 간접비의 경우 예산과 실제발생액은 동일하다.

가.
나.
다.
라.

- ① 100,000시간 ② 120,000시간
③ 140,000시간 ④ 150,000시간

가. 총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 ₩892,500
나. 제조간접비 추정방정식 ₩600,000 + 시간당 ₩10
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시간당 ₩15
라. 조업도차이 ₩100,000 율리가

36. 다음 표준원가계산 시 재료비 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의 구입 시점에서 가격차이 분리시 원재료 계정은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 ② 직접재료 구입가격 차이는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 ③ 직접재료는 사용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 ④ 재료비 차이가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 재료비가 표준원가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리한 차이는 차변에 기록된다.

37. 다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계산방식이다.
- ② 변동원가계산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원가를 회피할 수 있는 범위만 재고자산 원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변동원가계산은 단기적 특수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 ④ 변동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8. 다음 자료에 의해 당기의 변동
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손익
차이는 얼마인가?

단, 기초 제품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가. 생산량	10,000개	나. 변동제조원가	₩200,000
다. 판매량	8,000개	라. 고정제조원가	₩140,000
마. 기말제품	2,000개	바. 고정판매비	₩60,000

- ① 전부원가계산 당기손익이 ₩28,000 적다.
- ② 전부원가계산 당기손익이 ₩28,000 크다
- ③ 변동원가계산 당기손익이 ₩60,000 크다.
- ④ 변동원가계산 당기손익이 ₩60,000 적다.

39.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 ABC)의 기본적인 가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모든 제조원가는 생산단위에 따라 변동한다.
- ② 제품 또는 용역은 활동에 따른 성과가 요구되고 활동은 자원을 소비한다.
- ③ 단위수준의 동인(drivers)에 관련된 원가만이 제품원가이다.
- ④ 활동원가풀(cost pools)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활동을 네 개의 계층구조로 나눌 때 다음 중 제품유지활동
(product-sustaining activity)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 ① 작업준비활동
- ② 기계감가상각비
- ③ 품질전수조사
- ④ 제품설계변경활동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 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여 그 기간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 ②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부기한 연장 시에 이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공시송달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2.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처분을 받기 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②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4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조사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 ②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④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4. 법인세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② 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③ 영리내국법인에게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④ 비영리외국법인에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5.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② 자산을 위탁매매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④ 상품(부동산제외)이나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4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자료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150,000
- ② ₩120,000
- ③ ₩75,000
- ④ ₩60,000

가.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자료

- 소득금액: \$ 5,000 - 법인세액: \$ 1,500
- 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요건을 만족함

나. 환율: 1\$ = ₩1,000

다. 미국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해당법인이 받은 배당금

- 총배당금: \$ 350
- 배당금에 대한 미국정부의 원천세액: \$ 60

47.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국(사업연도 2014.1.1.~12.31)의 제10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850,000
- ② ₩920,000
- ③ ₩1,020,000
- ④ ₩2,400,000

가. 기부금 지출내역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7,000,000

나. 제10기 결산서에 계상된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며, 기부금 한도초과를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 ₩8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

다. 제9기에 발생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6,000,000

라. 전기 이전에 발생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음

48. (주)명성은 제12기 8월 1일 대주주로부터 건물(시가 10억원)을 12억원에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 중 옳은 것은?

- ① <손금산입> 2.0억원 (△유보)
- ② <익금산입> 1.5억원 (유보)
- ③ <손금산입> 1.5억원 (△유보) <익금산입> 1.5억원 (배당)
- ④ <손금산입> 2.0억원 (△유보) <익금산입> 2.0억원 (배당)

49.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다.
-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1배수 연분연승법을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 ③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는 날로 한다.

5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A씨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인적공제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 ₩10,000,000
② ₩10,500,000
③ ₩12,000,000
④ ₩12,500,000

가. A씨(남, 49세)의 총급여액 : ₩85,000,000
 나. 부양가족 현황
 처(48세), 아들(23세), 아들(16세), 딸(5세),
 부친(69세), 장인(73세)
 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은 없다.

52. 다음은 2014년도 거주자 박대환 씨의 사업소득 자료이다.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세전이익에는 가, 나, 다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① ₩165,000,000 ② ₩175,000,000
③ ₩185,000,000 ④ ₩190,000,000

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	₩5,000,000
나.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10,000,000
다. 사업용자산(토지)의 처분이익	₩20,000,000
라. 세전 이익	₩200,000,000

5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봉사료는 제외함)을 지급하는 개인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 ②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③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④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령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4. 다음은 복식부기자인 개인 사업자 A씨의 2014년 귀속 사업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 귀속분 추계 결정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A씨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한다.

- ① ₩0
- ② ₩22,000,000
- ③ ₩23,000,000
- ④ ₩45,000,000

가. 총수입금액 ₩100,000,000

나. 주요경비명세

- 원재료매입비용 ₩35,000,000
- 건물임차료 ₩19,000,000
- 종업원급여 ₩17,000,000
- 단순경비율 85%
- 적용배율 3배

다. 추가정보

A씨의 추계결정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12%)을
감안하여 ₩17,000,000으로 산출되었다.

55.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 ②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③ 하치장은 사업장이나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 ④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나, 부동산 상의 권리만의 대여나 일부 사업자(전기, 전기통신, 지방공사 등)의 부동산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6. 다음 중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재화 공급의 특혜 중 면세전용의 경우에 면세거래에 해당한다.
- ③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57.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홍길동씨는 종로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건물을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 동 임대는 중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동 임대용역의 거래장소로 옳은 것은?

- ① 중구
- ② 종로구
- ③ 마포구
- ④ 동대문구

58. 사업자인 한상공씨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하여 총공급가액 ₩4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4,000,000,000
- ② ₩2,400,000,000
- ③ ₩1,600,000,000
- ④ ₩1,500,000,000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지	₩1,000,000,000	₩600,000,000
건물	₩600,000,000	₩400,000,000

구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합계
2014년 1/1~3/31	₩300,000,000	₩100,000,000	₩400,000,000
2014년 4/1~6/30	₩200,000,000	₩200,000,000	₩400,000,000
2014년 7/1~9/30	₩300,000,000	₩200,000,000	₩500,000,000

- ① ₩180 ② ₩200
③ ₩360 ④ ₩40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제5회 모의고사 정답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③	21	④	41	③
2	①	22	④	42	④
3	①	23	①	43	①
4	②	24	③	44	④
5	④	25	②	45	③
6	③	26	②	46	①
7	④	27	④	47	①
8	③	28	①	48	④
9	③	29	③	49	②
10	②	30	②	50	④
11	①	31	①	51	①
12	④	32	③	52	②
13	①	33	①	53	②
14	④	34	①	54	④
15	②	35	③	55	③
16	④	36	③	56	②
17	①	37	④	57	②
18	②	38	②	58	① ② ③ ④
19	③	39	②	59	③
20	②	40	④	60	①

〈제1과목〉 재무회계

1. 다음 중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② 기업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이용목적에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③ 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
- ④ 경영자는 재무적 정보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가운데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하며,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55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보기③번)

포괄손익계산서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보기③번)

2. 다음 제시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posting)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올바른 설명은 어느 것인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현금 ₩100,000을 납입 받다.

- ① 현금 계정의 차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②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③ 매출계정의 대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 ④ 장기차입금 계정의 대변에 ₩100,000이 기입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회계처리(분개): (차) 현금 100,000 (대) 자본금 100,000

전기(posting)란 분개를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③번 매출계정과 ④번 장기차입금 계정은 주어진 문제의 분개 및 전기와 무관하다.

① 종업원에게 급여 ₩6,000을 지급하면서 분개를 누락하였다.

- ②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의 차변계정에 ₩100,000, 현금의 대변계정에 ₩10,000을 기재하였다.
- ③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0을 차입금계정과 미지급금계정에 각각 기재하였다.
- ④ 제품 ₩40,000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매출액계정에 ₩4,000과 외상매출금계정에 ₩40,000을 기재하였다.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다.

시산표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① 상계 (오류가 상계(상쇄)된 경우) ② 계정과목의 오류 ③ 이중전기, 이중분개 ④ 기장누락, 기장오류 ⑤ 동시오류 (거래금액 ₩10,000을 차변과 대변 모두 ₩1,000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⑥ 반대전기 (차변의 금액을 다른 계정 차변으로 전기를 하거나 대변의 금액을 다른 계정 대변으로 전기를 한 경우)	①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중복하거나 누락한 경우 ② 계정상의 금액을 잘못 전기한 경우 ③ 계정의 대변과 차변 합계 및 잔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④ 기타 기장상의 오류

- ①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③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 ④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보기①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보기③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영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 (2)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 영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 (3) 정산 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보고기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보험수리적손익 (보기③번)
- (2)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3)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 (1)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 (2)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보기④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참조)

(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참조)

5.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고수단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 ②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 ③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 ④ 주석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번호 7과 10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

10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기①번)

- (1) 기말 재무상태표 (보기③번)
- (2)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보기②번)
- (3) 기간 자본변동표
- (4) 기간 현금흐름표
- (5)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보기④번)
- (5-1)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 (6) 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55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보기③번)

포괄손익계산서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보기②번)

86 기업의 다양한 활동,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은 빈도, 손익의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달성된 재무성과를 이해하고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항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하고 사용된 용어와 항목의 배열을 수정한다. 이 때 중요성, 수익과 비용 항목의 성격 및 기능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 3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②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③ 모든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통상 3개월 이내)인 우선주와 같이 유동성이 매우 높아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07호 현금흐름표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금: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보기①번)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보기②번)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기③번)

9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보기④번) 현금관리는 잉여현금을 현금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주)상공상사의 다음 거래들로 인한 2014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유가증권의 단기산정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가. 2014년 1월 1일 A법인의 주식 1,000주(액면가 ₩5,000)을 1주당 ₩6,000에 매입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나. 2014년 4월 30일 A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현금배당금 ₩500,000과 주식 20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 다. 2014년 12월 1일 A법인의 주식 1/2을 1주당 ₩8,000에 처분하였다.

- ① ₩500,000
- ③ ₩2,000,000

- ② ₩1,500,000
- ④ ₩2,300,000

풀이) 정답은 ④이다.

2014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이 ₩2,300,000^{※1)} 증가한다.

※1) ₩2,300,000 = ₩500,000(배당금수입) + ₩1,800,000(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가.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6,000,000 (대) 현 금 / 예 금 등 ₩6,00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 = @₩6,000/주 × 1,000주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가 = @₩6,000/주

나. (차) 현 금 ₩500,000 (대) 배 당 금 수 익 ₩50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가 @₩5,000/주 (₩6,000,000 ÷ 1,200주)

주식배당으로 받은 200주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으나 보유주식수 증가로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가는 @₩6,000에서 @₩5,000으로 하락하게 된다.

다. (차) 현 금 / 예 금 등 ₩4,800,000^{※1)}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3,000,000

단기매매금융자산 처 분 이 익 1,800,000^{※2)}

※1) 처분가액 @₩8,000 × (1,200주 × 1/2) = ₩4,800,000

※2) 처분이익 ₩4,800,000(처분가액) - (@₩5,000 × 1,200주 × 1/2)
= ₩1,800,000

8. (주)상공은 2014년 2월 1일 토지를 ₩100,000에 구매하였다. 2014년 말 (주)상공은 당해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정가치가 ₩12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평가가 당기 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① ₩20,000 증가	변동 없음	② 변동 없음	변동 없음
③ 변동 없음	₩20,000 증가	④ ₩20,000 증가	₩20,000 증가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토지 ₩100,000 → ₩120,000) 증가액 (₩20,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에서 이전에 당기순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당기순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순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순익으로 인식한다.

40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순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9. 다음은 (주)안전의 2014년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자료이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인식을 포괄손익계산서 접근법에 의한다고 할 때 적정한 2014년 말 대손충당금 금액은 얼마인가?

- ① ₩90
- ② ₩100
- ③ ₩130
- ④ ₩140

가. 2014년 초 대손충당금 ₩100
 나. 2014년 매출액 ₩3,000(현금매출 ₩1,000포함)
 다. 2014년 대손발생액 ₩10
 라. 2014년 말 매출채권 잔액 ₩900

<추가자료>

과거 (주)안전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상매출액을 기준으로 2%, 매출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10% 정도가 매기 평균적으로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상각비의 인식과 충당금 설정은 이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접근법에 따른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인식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100
- (2) 당기 대손발생액에 따른 기말 설정전 대손충당금 잔액 ₩90
- (3)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 \text{외상매출액}(\text{총매출액} - \text{현금매출액}) \times 2\%(\text{설정율})$
 $= (\text{₩3,000} - \text{₩1,000}) \times 2\% = \text{₩4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text{추가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2)\text{번 금액}) + \text{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3)\text{번 금액})$
 $= (\text{₩100} - \text{₩10}) + \text{₩40} = \text{₩130}$

※ 참고: 재무상태표 접근법(보충법)

- (1) 기말 대손추산액
 $= \text{기말 매출채권 잔액} \times \text{대손추정률} = \text{₩900} \times 10\% = \text{₩90}$
- (2) (보충법에 의한) 추가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 \text{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 \text{대손충당금 감소액} + \text{대손충당금 증가액}$
 $= \text{₩100} - \text{₩10} + 0 = \text{₩90}$
- (3)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환입액)
 $= \text{기말 대손추산액} - \text{추가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 \text{₩90} - \text{₩90} = \text{₩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text{추가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2)\text{번 금액}) + \text{추가 설정액}((3)\text{번 금액})$
 $= \text{₩90} + \text{₩0} = \text{₩90}$

※ 참고: 대손회계

구 분	재무상태표 접근법	(포괄)손익계산서 접근법
개 념	매출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 설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손 설정
설정 기준	매출채권 잔액	매출액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매출액, 대손상각비
장 점	매출채권의 순실현가치 반영	수익-비용 대응

10. 2014년 7월 1일 회사는 건물과 관련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1,200,000을 지급하였다. 동 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이다. 회사가 재무상태표 작성일인 2014년 12월 31일에 위 보험료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조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회사는 보험 가입 당시 지급된 보험료 ₩1,200,000을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 ① (차) 보 험 료 600,000 (대) 선 급 보 험 료 600,000
- ② (차) 선 급 보 험 료 600,000 (대) 보 험 료 600,000
- ③ (차) 가 지 급 보 험 료 600,000 (대) 보 험 료 600,000
- ④ (차) 보 험 료 600,000 (대) 가 지 급 보 험 료 600,000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2014. 7. 1. 보험료 지급 (차) 보 험 료 1,200,000 (대) 현 금 1,200,000

2014.12.31. 수정분개 (차) 선급보험료 600,000 (대) 보 험 료 600,000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비용(보험료)은 ₩600,000이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자산(선급보험료)도 ₩600,000이다.

11. 대화상사는 창고화재로 인하여 일부 상품 ₩7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실되었다. 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품손실액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고 제장부 및 증빙을 검토하였더니 화재 발생일까지 매출 ₩950,000, 매입 ₩500,000, 기초상품재고액 ₩370,000이었다. 회사의 과거 3년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확인한 결과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다음 중 화재로 소실된 상품의 원가로 옳은 것은?

- ① ₩230,000
- ② ₩300,000
- ③ ₩420,000
- ④ ₩490,000

풀이) 정답은 ①번 ₩230,000이다.

$$\begin{aligned} (1) \text{ 매출원가} &= ₩950,000(\text{매출액}) \times 60\%^{※1}) \\ &= ₩570,000 \end{aligned}$$

$$※ \text{ 매출원가율} = (1 - \text{매출총이익률}) = (1 - 0.4) = 0.6(60\%)$$

$$\begin{aligned} (2) \text{ 기말상품재고액} &= \text{기초상품재고액} + \text{당기상품매입액} - \text{상품매출원가} \\ &= ₩370,000 + ₩500,000 - ₩570,000 \\ &= ₩300,000 \end{aligned}$$

$$\begin{aligned} (3) \text{ 화재로 소실된 상품의 원가} &= \text{기말상품재고액} - \text{상품보관액} \\ &= ₩300,000 - ₩70,000 \\ &= ₩230,000 \end{aligned}$$

12. 다음 중 유형자산의 원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③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소에 추정되는 원가
- ④ 관리 및 광고, 판촉활동과 관련한 원가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원가로 측정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번호 6과 15 참고)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자세한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번호 16과 17을 참고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6호 유형자산

인식시점의 측정

15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 구성요소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보기①)
-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보기②)
-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소에 추정되는 원가.
(보기③)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3.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후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급여관리프로그램처럼 자사만이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추정가능성 및 통제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49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 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기①번)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기①번)

개발단계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기④번)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과거 비용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보기①번)

2014년 12월 31일에 (주)전산은 위 사채(액면가액 ₩100,000,000)를 ₩97,500,000에 취득하였다. 2014년 12월 31일 사채이자 지급 후 자기사채 취득과 관련한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15. 다음은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② 감자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에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된다.
 ④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주식 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기업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주주(소유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감소하는 자본보다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경우 감자차손이 발생하며, 적게 지급하는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구 분	실질적 감자 (유상감자)	형식적 감자 (무상감자)
개 념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 주주에게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
자본금 및 자본총계	자본금: 감소 자본총계: 감소	자본금: 감소 자본총계: 불변
대가지급 여부	대가 지급함	대가 지급 없음
감자차익(차손)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모두 발생 가능	감자차익만 발생 가능
회계처리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잔액은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이월 결손금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차) 자 본 금 ×××(액면금액) 감자차익 ××× 감자차손 ××× (대) 현금(감자대가) ×××	(차) 자 본 금 ×××(액면금액) (대) 이월결손금 ××× 감자차익 ×××

상법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익)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익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대한상공(주)는 2014년 12월까지 개성공단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폐쇄시점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2014년 1월초에 발표하였다. 회사는 진행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폐쇄시점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해고일에 해고의 대가를 포함하여 ₩1,500,000을 지급할 것이며, 폐쇄일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들은 해고의 대가로 ₩500,000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장 종업원은 100명이며, 해고계획의 발표시점에 30명이 공장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공장폐쇄와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시점이 동일할 경우 해고계획 발표시점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 ① (차) 해고급여 150,000,000 (대) 미지급비용 150,000,000
- ② (차) 해고급여 120,000,000 (대) 미지급비용 120,000,000
- ③ (차) 해고급여 105,000,000 (대) 미지급비용 105,000,000
- ④ (차) 해고급여 50,00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000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1) 공장 종업원 100명 가운데 공장폐쇄 전 30명 퇴직 예상, 공장폐쇄일에 70명 퇴직 예상

(2) 대가의 지급

① 공장폐쇄시점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에게 해고일에 지급하는 해고의 대가 : ₩1,500,000

② 공장폐쇄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해고의 대가(해고급여): ₩500,000

③ 공장폐쇄시점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종업원급여 : ₩1,000,000 (= ₩1,500,000(①번의 금액) - ₩500,000(②번의 금액))

(3) 해고급여의 계산

= ₩500,000(해고급여) × 100명(해고로 퇴직하는 종업원의 수)

= ₩50,000,000

(4) 해고계획 발표시점의 회계처리

(차) 해고급여 50,00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0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9호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 159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해 다른 종업원급여와 구별하여 규정한다. 왜냐하면 채무가 생기는 사건은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으로 생긴다.
- 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인식

- 165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 (1)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 (2)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 167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해고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 (1) 해고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고려할 때, 해고계획에 유의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 (2) 해고계획에 해고대상 종업원의 수, 직무분류, 근무 장소(다만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와 그 계획의 완성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 (3) 해고계획에서 설정한 해고급여는 해고될 때 종업원이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종업원이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다.

측정

- 169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하고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종업원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 (2)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 170 해고급여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근무제공기간에 배분하기 위한 문단 70~74는 이와 관련이 없다.

문단 159~170에 대한 사례

배경

최근 취득의 결과로, 기업은 10개월 이내에 한 공장을 폐쇄하고, 폐쇄 시점에 그 공장에 남아있는 모든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은 일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고계획을 발표한다.

공장의 폐쇄 시점까지 남아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각 종업원은 해고되는 날에 3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공장의 폐쇄 시점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은 1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공장에는 종업원 120명이 있다. 해고계획의 발표 시점에, 기업은 전체 종업원 중 20명이 공장 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해고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총 현금유출액은 3,300,000원(즉 $20 \times 10,000\text{원} + 100 \times 30,000\text{원}$)이다. 문단 160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해고 대가로 제공하는 급여를 해고급여로 처리하고 근무용역 대가로 제공하는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한다.

해고급여

해고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10,000원이다. 이는 종업원이 공장의 폐쇄 시점까지 남아서 근무용역을 제공하느냐, 공장 폐쇄 전에 퇴사하느냐에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종업원이 공장의 폐쇄 시점 전에 퇴사할 수 있지만,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공장을 폐쇄하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즉 공장이 폐쇄될 때에는 종업원이 모두 퇴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계획을 발표하는 시점과 공장폐쇄와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시점 중 이른 날에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라 제공하는 해고 급여인 1,200,000원(즉 $120 \times 10,000\text{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근무용역의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

종업원이 10개월 동안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증분급여는 그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 기업은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이 급여를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할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00원(즉 $2,000,000 \div 10$)을 10개월의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각 1개월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만큼 부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17.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설비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제품보증비용에 대한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②번 ~ ④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번호 32에서 설명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기②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16호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가모형

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회계추정의 변경

32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대손 (보기②번)
- (2) 재고자산 진부화
- (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 (4)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보기③번)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 (5) 품질보증의무 (보기④번)

18. 다음 중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금흐름의 종류를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 ②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기업의 발생주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 ④ 직접법에 의한 작성과 간접법에 의한 작성에 있어서 영업현금흐름의 크기는 다르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 ①번 현금흐름의 종류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재무활동이 누락되어 있다.
- ③번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와 관련이 있다.
- ④번 직접법에 의한 작성과 간접법에 의한 작성에 있어서 영업현금흐름의 크기는 동일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07호 현금흐름표

목적

기업의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현금흐름의 사용 용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보기③번)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현금흐름표를 통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 1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에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보기③번)

현금흐름표의 표시

- 10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보기①번)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18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 (1)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직접법'이라 한다)
- (2)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이하 '간접법'이라 한다) (보기④번)

- (2)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보기①번)
- (가)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 해준다.
- (나)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3)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4)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보기④번)
- (5)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보기②번)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제2과목〉 원가회계

21. 다음 중 기초원가(prime cos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② 직접재료비 + 제조간접비
- ③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④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풀이) ④번이 기초원가(prime costs)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③번은 가공원가(전환원가)에 해당한다.

※ 원가의 분류

- (1) 기초원가(prime cost, 기본원가, 직접원가(direct cost))
특정 제품 제조과정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며,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 (2) 가공원가(전환원가, conversion cost)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며,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2. 다음 중 계정분류법에 의한 원가추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료 사용량이 생산중량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중량이 감소한 경우 부재료 사용량도 감소했을 것이다.
- ②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는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복리후생비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지난달에 비해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 ④ 전력비가 생산량에 비례해서 변동하지 않는다면,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 전력비가 비례해서 증가했을 것이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계정분류법이란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 ① 재료(부재료) 사용량이 생산량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변동비에 해당하므로,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재료(부재료) 사용량도 비례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감가상각비는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고정비에 해당하므로,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감가상각비(고정비)는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복리후생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변동한다면 변동비에 해당하므로, 지난달에 비해 인원수 변동이 없다면 복리후생비도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전력비가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고정비에 해당하므로, 지난달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전력비(고정비)는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 원가함수의 추정방법

원가함수란 조업도와 원가와와의 관계를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원가추정의 추정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1) 공학적 방법

다른 추정방법들과 달리 과거의 원가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공정이나 생산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투입물과 산출물간의 관계를 계량화하여 추정하는 방법

(2) 회귀법

기업의 여러부서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3) 계정분류법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서는 먼저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별로 총계를 계산한다. 총변동원가를 조업도(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 원가함수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추정치가 되고, 총고정원가는 합계 금액이 원가함수 추정치로 이용된다.

(4) 고저점법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소 두 보고기간의 원가와 조업도 자료가 필요하다.

(5) 산포도법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총원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그래프상에 과거의 각 조업도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점으로 표시한 산포도를 그린 후 이 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을 찾아내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6) 회귀분석법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① 단순회귀분석법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법

② 다중회귀분석법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법

23.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선입선출법

② 이동평균법

③ 총평균법

④ 후입선출법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당기순이익(기말재고자산)을 가장 크게 보고하는 원가흐름의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교

(가정: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많은 경우
= 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고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구 분	재고자산평가방법
기말재고자산(평가액)의 크기 이익(당기순이익)의 크기 법인세의 크기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매출원가의 크기 현금흐름개선효과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가흐름의 가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인정하고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번호 23, 문단번호 25 참조)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인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7.12, 7.13 참조)

24. 직접재료원가(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원가(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제조 간접원가(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음 중 당기의 제조활동에 사용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계산을 위해서 재공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차)제품 xxx (대)재공품 xxx ② (차)제품 xxx (대)제조간접원가 xxx
③ (차)재공품 xxx (대)제조간접원가 xxx ④ (차)재공품 xxx (대)제품 xxx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제품원가계산을 위하여 당기 제조활동에 사용된 제조간접원가를 재공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는 ③번 (차)재공품 xxx (대)제조간접원가 xxx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회계처리

직 접 재 료 비 :	매 입 시 (차) 원 재 료 xxx	(대) 현금·예금/매입채무 xxx
	재료사용 (차) 원 재 료 비 xxx	(대) 원 재 료 xxx
	기말결산 (차) 재 공 품 xxx	(대) 원 재 료 비 xxx
직 접 노 무 비 :	지 급 시 (차) 노 무 원 가 xxx	(대) 현금 / 미지급비용 xxx
	기말결산 (차) 재 공 품 xxx	(대) 노 무 원 가 xxx
제 조 간 접 비 :	발생집계 (차) 제 조 간 접 원 가 xxx	(대) 감 가 상 각 비 xxx
		수 선 유 지 비 xxx
		보 험 료 xxx
	기말결산 (차) 재 공 품 xxx	(대) 제 조 간 접 원 가 xxx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결산 (차) 제 품 xxx	(대) 재 공 품 xxx
매 출 원 가 계 산 :	기말결산 (차) 매 출 원 가 xxx	(대) 제 품 xxx

29. 한빛공업은 개별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중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무비의 90%로 배부하며, 10월 31일 현재 유일하게 미완성된 작업 #4의 직접재료비는 ₩16,000, 제조간접비는 ₩18,000인 경우 10월 중 직접재료비는 얼마인가?

- ① ₩60,000 ② ₩64,000
 ③ ₩65,000 ④ ₩68,000

가. 재공품(10월 1일) ₩34,000
 나. 원가요소 소비액
 - 직접재료비 (?)
 - 직접노무비 ₩50,000
 - 제조간접비 ₩45,000
 다. 제품계정 대체액 ₩140,000

풀이) 아래 재공품 T(티)계정을 보면 10월 직접재료 소비액은 ③번 ₩65,000이 된다.

재공품a/c			
기초재공품	₩34,000	제품대체(완성)	₩140,000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50,000		
제조간접원가	45,000	기말재공품(작업#4)	54,000 ^{※1)}
	₩194,000		₩194,000

※1) 기말재공품 = ₩16,000(직접재료원가) + 20,000(직접노무원가) ^{※2)} + 18,000(제조간접원가)

※2)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원가의 90%이며, 기말 제조간접원가는 ₩18,000이므로
 기말 직접노무비는 ₩20,000(= ₩18,000 ÷ 0.9)이다.

30. 10월 중에 두 개의 제조지시서(No.2, No.3)가 착수되었고 제조지시서 No.1은 완성되었다. 각 제조지시서와 관련하여 10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No.1	No.2	No.3	합계
월초재공품	₩60,000	-	-	₩60,000
직접재료비	₩16,000	₩44,800	₩67,200	₩128,000
직접노무비	₩32,000	₩30,400	₩49,600	₩112,000
제조간접비	₩22,400	₩21,280	₩34,720	₩78,400
합 계	₩130,400	₩96,480	₩151,520	₩378,400

- ① 월초재공품재고액 ₩60,000 ② 당기총제조비용 ₩378,400
 ③ 월말재공품재고액 ₩248,000 ④ 당기제품제조원가 ₩130,400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당기총제조비용은 ₩378,400(합계액)에서 ₩60,000(월초재공품)을 제외한 ₩318,400이다.

	No.1(완성)	No.2(미완성)	No.3(미완성)	합 계
월초재공품	₩60,000 (보기①)	-	-	₩60,000 (보기①)
직접재료원가	₩16,000	₩44,800	₩67,200	₩128,000
직접노무원가	₩32,000	₩30,400	₩49,600	₩112,000
제조간접원가	₩22,400	₩21,280	₩34,720	₩78,400
합 계	₩130,400 (보기④)	₩96,480	₩151,520	₩378,400
제품 대체		↳월말재공품(보기③)←		

31. (주)대한은 종합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있는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②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 ③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④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 ②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③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완성품원가는 과소평가된다.
- ④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한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과대평가된다.

※ 참고: 기말재공품 완성도 오류에 따른 영향

기말재공품 완성도 과소평가 → 기말재공품원가 과소평가, 완성품원가 과대평가

기말재공품 완성도 과대평가 → 기말재공품원가 과대평가, 완성품원가 과소평가

32. 다음 연산품 종합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산품 종합원가계산은 동일한 투입 원재료로부터 동시에 생산되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이중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 ② 연산품의 원가계산 방법은 결합원가의 배부기준과 관련이 있다.
- ③ 물량기준법은 중량, 용적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공통된 물량 기준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
- ④ 순실현가치기준법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적인 가공비 또는 판관비를 차감한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물량기준법은 물리적 속성이 다른 결합제품이 산출되는 경우(공통된 물량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결합원가 배부방법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는 경우	물량기준법	중량이나 부피, 면적 등 공통된 물리적 속성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장점 ① 측정이 쉽고 적용이 간편하다. ② 결합제품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점 ① 물리적 속성이 다른 결합제품이 산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② 결합제품 중 판매가치가 낮은 제품은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각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장점 ① 결합제품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된다.

34. CVP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도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②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 ③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④ 분석기간이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이라고 가정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CVP분석에서는 원가와 수익은 유일한 독립변수인 조업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조업도는 독립변수인 반면 원가와 수익은 종속변수이다.

※CVP분석의 가정

- (1)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
혼합원가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한다.
- (2) 원가와 수익은 유일한 독립변수인 조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보기①번)
(= 판매량, 매출액 등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 (3)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보기②번)
(관련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변동원가 및 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4)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기③번)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5)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만큼 단기간이라고 가정한다. (보기④번)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명목가치로 평가하여 의사결정한다.)
- (6) 제품의 종류가 복수인 경우에는 매출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35. (주)한강은 3분법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산차이, 능률차이 및 조업도 차이로 분리하고 있다.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당기제품생산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몇 시간인가? 단, 고정제조 간접비의 경우 예산과 실제발생액은 동일하다.

가. 총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 ₩892,500
나. 제조간접비 추정방정식 ₩600,000 + 시간당 ₩10
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시간당 ₩15
라. 조업도차이 ₩100,000 유리가

- ① 100,000시간
- ② 120,000시간
- ③ 140,000시간
- ④ 150,000시간

풀이) 정답은 ③번 140,000시간이다.

- (1)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계산
문제 “다”에서 제시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15/시간)은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의 합계이고,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나”를 보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시간당 ₩10이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5가 된다.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15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 @₩10을 차감하여 계산)
- (2) 기준조업도 계산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 ÷ 기준조업도 (=기준시간)

@₩5 = ₩600,000 ÷ 기준조업도

따라서 기준조업도는 ₩600,000 ÷ @₩5 = 120,000시간

(3)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계산

조업도 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00,000 = ₩6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표준원가계산의 차이분석에서 “-”는 유리한 차이, “+”는 불리한 차이)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700,000

(4) 표준조업도 계산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

700,000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 @₩5

따라서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는 ₩700,000 ÷ @₩5 = 140,000시간

※ 별해

문제에서 제시된 ‘나. 제조간접비 추정식 ₩600,000 + 시간당 ₩10’을 분석하면 ₩600,000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 ₩10은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다’에서 주어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시간당 ₩15’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10)을 차감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5이 된다.

조업도차이(-₩100,000)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600,000 - SQ × (₩15 - ₩10)

따라서 SQ(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는 ₩700,000 ÷ @₩5 = 140,000시간

36. 다음 표준원가계산 시 재료비 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의 구입 시점에서 가격차이 분리시 원재료 계정은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 ② 직접재료 구입가격 차이는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 ③ 직접재료는 사용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 ④ 재료비 차이가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 재료비가 표준원가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리한 차이는 차변에 기록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직접재료비의 가격차이는 사용(투입)시점과 구입시점에 각각 계산할 수 있는데,

사용시점보다 구입시점에서 구분하는 구입가격차이가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7. 다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계산방식이다.
- ② 변동원가계산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원가를 회피할 수 있는 범위만 재고자산 원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변동원가계산은 단기적 특수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 ④ 변동원가계산은 전부원가계산에 비해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원가정보의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원가계산방법이 다른 원가계산방법보다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부원가계산 vs.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구 분		변동원가계산
외부보고용 재무제표 작성	원가정보의 활용목적		내부관리 및 원가통제목적 (계획 및 통제)
미래응역잠재력 개념	자산의 정의		원가회피 개념
제품원가에 포함	고정제조간접원가 처리		기간비용으로 처리
제품원가	변동 제조 원가	직접재료원가(DM)	제품원가
		직접노무원가(DL)	
		변동제조간접원가(VOH)	
제품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FOH)		기간비용
기능별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보고방식		공헌이익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손익계산서 형태		매출액 변동원가 공헌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
판매량 및 생산량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판매량

38. 다음 자료에 의해 당기의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손익 차이는 얼마인가?

단, 기초 제품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가. 생 산 량	10,000개	나. 변동제조원가	₩200,000
다. 판 매 량	8,000개	라. 고정제조원가	₩140,000
마. 기말제품	2,000개	바. 고정 판 매 비	₩ 60,000

- ① 전부원가계산 당기손익이 ₩28,000 적다.
 ② 전부원가계산 당기손익이 ₩28,000 크다
 ③ 변동원가계산 당기손익이 ₩60,000 크다.
 ④ 변동원가계산 당기손익이 ₩60,000 적다.

풀이) 정답은 ②번,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이익이 ₩28,000만큼 더 크다.

생산량(기말재고)이 판매량(기초재고)보다 크므로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4 (= ₩140,000 ÷ 10,000개)이다.

전부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text{생산량 } 10,000\text{단위} - \text{판매량 } 8,000\text{단위}) \times \text{₩}14 = \text{₩}28,000$$

$$= (\text{기말재고 } 2,000\text{단위} - \text{기초재고 } 0\text{단위}) \times \text{₩}14 = \text{₩}28,000$$

※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차이 조정

방법1. 전부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이익
 =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말제품재고량 - 기초제품재고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재고자산 증감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방법2.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39. 활동기준원가
계산(Activity
Based Costing
: ABC)의 기본적
인 가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활동	제조간접비	원가동인	A제품	B제품	C제품
구매	₩4,000,000	구매횟수	70회	90회	40회
제조	₩5,400,000	부품수	제품당 5개	제품당 7개	제품당 5개
생산량	-	-	40,000개	48,000개	2,000개

- ① 모든 제조원가는 생산단위에 따라 변동한다.
 ② 제품 또는 용역은 활동에 따른 성과가 요구되고 활동은 자원을 소비한다.
 ③ 단위수준의 동인(drivers)에 관련된 원가만이 제품원가이다.
 ④ 활동원가풀(cost pools)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ABC)은 기업이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하고, 자원을 소비하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제품이 생산된다고 보는 원가계산방법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자원과 활동, 제품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 ① 번 모든 제조원가는 생산단위가 아닌 활동에 따라 변동한다.
 자원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하고 활동별로 집계된 원가를 활동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작업에 배부한다.
- ③ 번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제품원가는 단위수준의 동인에 관련된 원가만이 아니라 기업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자원원가와 각 활동별로 소비된 자원동인을 기준으로 집계된 활동원가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 ④ 번 활동중심점(원가중심점 cost pools)의 수를 증가시키면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원가측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활동원가풀(활동중심점, cost pools)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시스템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활동중심점(원가중심점 cost pools)의 수는 결정되어야 한다.

구 분	전통적 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기본가정	•각 제품이 자원을 소비한다. (제품이 제조간접원가를 발생시킨다.) •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보기①번)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 (보기②번) •제조간접원가에는 생산량 이외 다른 가동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원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가대상	•공장 전체, 부문, 제품, 서비스	활동, 제품, 서비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	•직접노동시간,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단위수준)관련 배부기준 (보기③번)	•인과관계가 높은 다양한 원가동인(보기④번) •작업준비횟수, 검사시간 등 생산량과 관계없는 비단위수준 원가동인도 사용됨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공장전체 또는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장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높다.
단점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낮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

- ① 작업준비활동
- ② 기계감가상각비
- ③ 품질전수조사
- ④ 제품설계변경활동

①번 작업준비활동은 생산묶음수준활동
②번 기계감가상각은 공장설비수준활동
③번 품질전수조사는 제품단위수준활동에 해당한다.

활동유형	활동유형별 특징
제품단위수준 활동(Unit)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수행되는 활동(생산량에 비례하여 수행됨) 예) 절삭활동, 조립활동, 밀링활동, 도장활동, 품질검사(전수)활동 등
생산묶음수준 활동(Batch)	생산량보다는 묶음(batch) 단위로 수행되는 활동 (하나의 묶음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량에 관계없이 묶음 수에 비례하여 수행됨) 예) 구매주문활동: 재료수령활동, 재료처리활동, 작업준비활동, 선적활동 등 품질검사활동: 표본검사 (전수검사는 제품단위수준활동에 해당함)
제품유지활동 (Product)	특정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거나 생산하는 제품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제품의 생산량이나 묶음 수와는 관계없이 제품의 종류에 비례하여 수행됨) 예) 제품설계활동, 제품설계변경활동, 제품테스트활동 등

공장설비수준 활동	공장 설비전체나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특정제품이 아닌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활동과 관련 있음) 자의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제품별 수익성분석 측면에서는 설비수준활동 원가를 제외하는 것이 유용함 예) 공장관리활동, 조경활동, 냉난방활동 등
----------------------	---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의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 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하여 그 기간의 말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 ②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부기한 연장 시에 이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공시송달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만 담보제공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제공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제1호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4호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5호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015년 민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기①번)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 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 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보기②번)
- ③ ~ ④ (생략)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기③번)
- ③ (생략)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 3. (생략)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보기③번)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보기④번)

42.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처분을 받기 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②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참조)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보기④번)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보기②번)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기③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기①번)
 -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 ② (생략)
-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 ⑧ (생략)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 ③ (생략)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략)

4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조사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 ②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④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납세자가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참조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기②번)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기③번)
 -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보기④번)
 -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법인세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② 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③ 영리내국법인에게는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 ④ 비영리외국법인에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3호.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다.

※ 편집자 의견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원천소득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참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가운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법인세법 제3조 제4항 참조) 보기 ①번은 불완전한 표현에 해당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볼 때 ①번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보기②번) (보기③번)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2. 청산소득(清算所得)
-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보기①번)

- 1. ~ 7. (생략)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보기④번) (보기①번)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보기④번)

법인세법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기④번)

45.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② 자산을 위탁매매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 ③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④ 상품(부동산제외)이나 제품의 판매의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제외한 이자 및 할인액’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보기 ③번과 같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수익에 대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보기④번)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 2. 3., 일부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보기④번)
 -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3. 상품 등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

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보기②번)
5. (생략)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 2. 3., 일부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 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기③번)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보기③번)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4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자료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150,000
- ② ₩120,000
- ③ ₩75,000
- ④ ₩60,000

가. 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자료

- 소득금액: \$ 5,000 - 법인세액: \$ 1,500
- 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요건을 만족함

나. 환율: 1 \$ = ₩1,000

다. 미국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해당법인이 받은 배당금

- 총배당금: \$ 350
- 배당금에 대한 미국정부의 원천세액: \$ 60

풀이) 간접외국납부세액

$$\begin{aligned}
 &= \text{외국법인의 법인세액} \times \text{배당액} / (\text{외국법인의 소득금액} - \text{외국법인의 법인세액}) \\
 &= \$1,500 \times \$350 / (\$5,000 - \$1,500) = \$150 \\
 &= \$150\text{달러} \times ₩1,000/\$(\text{환율}) = 150,000\text{원}
 \end{aligned}$$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③ ~ ⑤ (생략)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	$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
--	---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포함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삭제 <2010. 12. 30.>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48. (주)명성은 제12기 8월 1일 대주주로부터 건물(시가 10억원)을 12억원에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 중 옳은 것은?

① <손금산입> 2.0억원 (△유보)

② <익금산입> 1.5억원 (유보)

③ <손금산입> 1.5억원 (△유보) <익금산입> 1.5억원 (배당)

④ <손금산입> 2.0억원 (△유보) <익금산입> 2.0억원 (배당)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특수관계자(대주주)로부터 건물을 시가(10억원)보다 높게 매입하였으므로, 시가를 초과하는 2억원은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발생)로 세무조정한다.

그리고 손금에 산입한 시가를 초과하는 2억원의 귀속을 보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대주주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세무조정 합니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2015. 2. 3., 일부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49.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취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①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기①번)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보기②번) (보기③번)

소득세법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기④번)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50.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다.
-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1배수 연분연승법을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
- ③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는 날로 한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 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참조)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보기①번)
-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 (중략)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 ⑤ (생략)
-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① ~ ② (생략)
-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times 3$$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보기②번)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부칙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611호(2013. 1. 1., 일부개정) 부칙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기②번)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보기③번)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보기③번)
 2. ~ 3.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보기④번)

※ 참고: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출처: 국세청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

2015년 퇴직자	2016년 퇴직자
□ 퇴직소득 과세방식 (①→④ 순서로 계산)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정률공제(40%)폐지)
② (연분) ① ÷ 근속연수 × 5(연분연승 적용비율)	② (환산급여) ① ÷ 근속연수 × 12
③ ② × 기본세율(6~38%)	③ (②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6~38%)
④ (연승) ③ ÷ 5 × 근속연수	④ (연승) ③ ÷ 12 × 근속연수

5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A씨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인적공제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 ₩10,000,000
- ② ₩10,500,000
- ③ ₩12,000,000
- ④ ₩12,500,000

가. A씨(남, 49세)의 총급여액 : ₩85,000,000
 나. 부양가족 현황
 처(48세), 아들(23세), 아들(16세), 딸(5세),
 부친(69세), 장인(73세)
 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은 없다.

풀이) 정답은 ①번 ₩10,000,000이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9,000,000 + ₩1,000,000 = ₩10,000,000

1. 기본공제 = ₩1,500,000 × 6명 = ₩9,000,000
 본인, 처(배우자), 아들(16세), 딸(5세), 부친(69세), 장인(73세)
 아들(23세)은 20세를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추가공제 = ₩1,000,000
 경로우대자공제(장인 73세) ₩1,000,000 × 1명 = ₩1,000,000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은 없음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52. 다음은 2014년도 거주자 박대환 씨의 사업소득 자료이다.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세전이익에는 가, 나, 다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① ₩165,000,000 ② ₩175,000,000
③ ₩185,000,000 ④ ₩190,000,000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사업소득금액 = 세전이익 - 총수입금액불산입 = ₩200,000,000 - ₩25,000,000
= ₩175,000,000

※ 총수입금액불산입

- 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수증이익은 총수입금액불산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 다. 사업용자산(토지)의 처분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봉사료는 제외함)을 지급하는 개인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②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③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④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령자가 개인주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풀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상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35조 참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참조)

배당소득은 특정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17조(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역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보기③번)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보기①번)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보기①번)
2. ~ 5. (생략)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보기①번)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보기②번)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보기②번)

54. 다음은 복식부기자인 개인 사업자 A씨의 2014년 귀속 사업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 귀속분 추계 결정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을 계산 하면 얼마인가? 단, A씨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가정한다.

- ① ₩0
- ② ₩22,000,000
- ③ ₩23,000,000
- ④ ₩45,000,000

가. 총수입금액 ₩100,000,000

나. 주요경비명세

- 원재료매입비용 ₩35,000,000
- 건물임차료 ₩19,000,000
- 종업원급여 ₩17,000,000
- 단순경비율 85%
- 적용배율 3배

다. 추가정보

A씨의 추계결정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12%)을 감안하여 ₩17,000,000으로 산출되었다.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 A씨의 비교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text{₩100,000,000} - \text{₩100,000,000} \times 85\%) \times 3\text{배}$$

$$= \text{₩45,000,000}$$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5.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 ②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③ 하치장은 사업장이나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 ④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나, 부동산 상의 권리만의 대여나 일부 사업자(전기, 전기통신, 지방공사 등)의 부동산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풀이) ③번의 설명은 반대로 설명되었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참조),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보기①번)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보기③번)
 - 2. (생략)
- ⑥ (생략)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사업장)

-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생략)	(생략)
2.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보기②번)
3. ~ 14.(생략)	(생략)
15.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보기④번)

-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보기④번)
 - 1. ~ 11. (생략)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보기③번)

56. 다음 중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산물은 주산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재화 공급의 특혜 중 면세전용의 경우에 면세거래에 해당한다.
- ③ 화폐,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풀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정답은 ②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기③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보기③번)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보기④번)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보기②번)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기①번)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동 임대용역의 거래장소로 옳은 것은?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제5회 모의고사 풀이 및 해설 - 69 -

58. 사업자인 한상공씨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총공급가액 ₩400,000,000(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지	₩1,000,000,000	₩600,000,000
건물	₩600,000,000	₩400,000,000

- ① ₩4,000,000,000 ② ₩2,400,000,000
 ③ ₩1,600,000,000 ④ ₩1,500,000,000

풀이) 모두 정답

문제 보기에 알맞은 지문(₩160,000,000)이 없어 모두 정답처리 됨

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

$$= \text{총공급가액} \times \text{건물의 기준시가} / (\text{건물의 기준시가} + \text{토지의 기준시가})$$

$$= ₩400,000,000 \times ₩400,000,000 / (₩400,000,000 + ₩600,000,000)$$

$$= ₩160,000,000$$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 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text{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text{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illegible]

따라서 미등록가산세는 ₩180(= ₩18,000 × 1%)이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5회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해설서

(비매품)

-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있으며, 풀이해설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더존비즈온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허가를 받아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이용과 출판인쇄 및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존지식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DOUZONE

